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09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3일

발 의 자: 김경훈, 강석주,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황철규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방지 등 원생 및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교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마. 학교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
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및 범죄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와 이를 통해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9. 그 밖에 학교장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학교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주변 조정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한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장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학교 내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9조(관리책임자 등 교육) ① 학교장은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 처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내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은 학교 내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범죄 예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해 관련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